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지 분포기준을 현행화하고, 표준지 증감현황 서식의 항목 세분화를 통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분포기준을 현행화(안 별표 1)

나. 표준지증감현황 서식에서 용도지역별 현황 항목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전자우편 : waterlily8@korea.kr

○ 팩스 : 044-201-5536